



절차적 보호 조치에 관한 학부모/보호자/대리인 안내문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 문서를 잘 보관해 주십시오.)학부모/후견인/대리인을 위한

부모와 아동의 특수교육 권리
장애인 교육법(IDEA) 제B편에 따라

학부모/후견인/학생에게:

본 통지서는 귀 자녀가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본 통지서는 18세가 되어 이러한 권리에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도 제공됩니다. 자녀가 특수교육에 의뢰되었고 일반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옵션들이 고려되었고 적절히 사용된 경우, 귀하는 자녀를 위한 특수교육 의뢰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특수교육은 출생 시점부터 22번째 생일 사이의 장애 아동들에게 제공됩니다. 연방 및 주 법은 특수교육 배치와 서비스를 위한 평가 및 판별 전 과정에서 귀하와 자녀를 보호합니다. 장애 아동들의 부모는 IEP 수립을 포함하여 개별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고 공립 및 사립 프로그램이 포함된 가능한 모든 대체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무료 공립교육 (FAPE) 가용성에 대해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통지서 사본은 한 학사년에 1회 제공되며, 다음의 경우에도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1) 최초의 의뢰 또는 귀하의 평가 요청; (2) 자녀에 대한 재평가; (3) 학사년 동안 주정부에 불만제기서 또는 적법절차 (due process complaint)를 1 차로 접수하였을 때; (4) 징계 조치로 배치 변경 결정시; 또는 (5) 귀하의 요청시. 귀하는 명백하게 실행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모국어 또는 다른 소통 방식으로 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모국어 또는 다른 소통 방식이 글로 표기되지 않는 언어인 경우, 이 통지는 구두로 번역하여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용어 설명은 권리에 대한 언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안내서의 내용이나 사용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귀하는 거주지 교육구 특수교육부 디렉터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그의 전화번호는 본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의

특수교육: 장애 아동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의 비용 부담 없이 특별히 고안된 교육으로, 교실, 가정, 병원 및 시설, 그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체육 교육을 포함한다.

관련 서비스: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교통편 및 기타 발달 지원, 교정 및 보조 서비스(장애 상태의 조기 발견 및 평가 포함). 관련 서비스에는 또한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언어-구어 교정 및 청각 서비스
2. 통역 서비스
3. 심리 서비스
4.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5. 치료를 위한 오락이 포함된 오락
6. 재활 상담이 포함된 카운슬링 서비스
7. 방향성 및 기동성 서비스
8. 학교 보건 및 간호 서비스
9. 진단 또는 평가 목적으로 한정된 의료 서비스
10. 소셜 워크 서비스
11.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장애 아동: 장애인 교육법 (“IDEA”)에서 “장애 아동”이란 지적 장애, 난청을 포함한 청각 장애, 구어 또는 언어 장애, 실명을 포함한 시각 장애, 정서 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자폐증, 외상성 뇌손상, 기타 건강 장애 또는 특수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으로 정의합니다.

평가: 자녀의 장애 여부 그리고 자녀의 교육적 혜택을 위해 자녀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유형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법 제 56320 - 56339 조 및 미 연방법 타이틀 제 1414(a), (b) 및 (c) 조에 의거한 다양한 테스트 및 측정을 사용하는 자녀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도구는 자녀를 위해 개별적으로 선정되며 지역 교육 기관에 소속된 유능한 전문인에 의해 실시됩니다. 테스트 및 평가 자료와 절차는 인종, 문화 또는 성적 차별이 없도록 선정되고 실시됩니다. 이것의 실행이 명백하게 불가능하지 않는 한, 자료 또는 절차들은 자녀의 모국어나 대화방식으로 제공되고 실시될 것입니다.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FAPE”): (1) 귀하에게 비용을 부과함이 없이 공공 감독 및 지휘 아래 공공 비용으로 제공되며; (2) 캘리포니아 교육부 표준에 부합되며; (3) 교육적으로 자녀에게 혜택이 되기 위해 유아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실시되도록 서면으로 수립된 개별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자녀의 IEP 팀이 작성한 문서로서 최소한 다음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재의 학업 성취 및 기능적 수행 수준; (2) 측정 가능한 연 목표; (3) 동년배 아동에서 검토된 연구에 근거하여, 실행 가능할 정도로 아동에게 제공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그리고 보조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언급; (4) 아동이 일반교육 프로그램의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한 설명; (5) IEP에 포함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작 예정일, 기간, 빈도 및 장소; 그리고 (6) 아동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적어도 매년 판단하기 위해 적절하고 객관적인 기준, 평가 절차 및 일정.

가장 비제한적인 환경 (“LRE”): 가능한 한 최대의 적절한 범위까지,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을 것이며, 특수 학급, 별도의 학교 또는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분리 조치 등은 장애의 본질 또는 심각성이 보조적인 도움과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학급에서의 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지역 교육기관 (“LEA”): 이 용어는 교육구, 카운티 교육부 (“COE”), 특수교육 지방계획지역 (“SELPA, 셀파”) 또는 SELPA 멤버로서 참여하는 차터스쿨을 포함합니다.

주요 권리 통보: 자녀는 주 법 및 절차에 의해 무능력자로 결정되지 않는 한, 18세에 도달하였을 때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모든 의사 결정을 할 권리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 하에서 후견인이 없는 성인은 법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부모: 학부모에는 다음의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1)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갖는 사람; (2) 지정된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 없는 성인 학생; (3) 조부모, 양부모 또는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친척을 포함하여 친부모 또는 입양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 (4) 대부/대모; 및 (5) 법원 명령으로 아동을 위해 교육 결정을 할 친부모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제한된 경우, 위탁 부모.

교육 기록은 언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등록된 아동들의 모든 학부모 또는 후견인은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과 캘리포니아 교육법 하에 기록을 검토할 권리를 갖습니다. 교육 기록이란 자녀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정보를 얻는 교육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유지 관리하는 기록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연방 및 주 법 모두에서 교육 기록이란 디렉토리 정보 이외에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별 가능한 정보라고 정의하며, 학교나 지역 교육기관 (LEA)이 관리하거나 교직원이 자신의 직무 수행에서 필기, 인쇄물, 테이프, 필름, 마이크로필름, 컴퓨터 또는 기타 수단으로 기록된 형태로 교육 기록을 관리할 것이 요구됩니다. 교육 기록에는 교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사용하기 위해 작성되고 보관된 비공식적인 개인 메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록에 한 아동 이상의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귀하는 자녀와 관련된 기록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아동의 이름, 학부모나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 (2) 아동의 주소; (3) 아동의 사회보장번호, 학번 또는 법원기록 번호 같은 신원번호; (4) 개인적 특징 또는 합리적인 확실성을 갖고 아동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타 정보 목록.

추가적으로, 장애 아동의 학부모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1) 아동에 대한 신원 증명, 평가 및 교육 배치에 관한 모든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아동에 대한 무상 공립교육 (FAPE) 규정 검토; 및 (2)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 LEA로부터 답변을 받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FERPA) 요건에 의거하여 자신의 대리인이 자녀의 기록 열람 및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후견인 지위, 별거, 이혼과 같은 문제를 관장하는 주법에 따라 해당 학부모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고 LEA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는 한, 학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18세가 되었거나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후견인을 두지 않은 학생에게로 이전됩니다. 각 학교의 기록 관리인은 교장입니다. 교육구 기록 관리인은 본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육 기록들은 학교나 교육구에 보관될 수도 있지만 각 장소에서의 서면 기록 요청은 학교에서의 기록 요청으로 간주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기록 관리인은 학생 기록 유형 및 장소 목록을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이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특수교육 기록은 폐기됩니다.

각 LEA 는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각 LEA 에서 한 사무관은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책무를 맡아야 합니다.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 교육법 (IDEA) 및 FERPA 하에 해당 주의 정책과 절차에 관한 훈련이나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각 LEA 는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이름과 직책이 포함된 최근의 명단을 일반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인은 귀 자녀의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검토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로 제한합니다: 귀하, 최소 16 세 이상이거나 10 학년을 이수한 자녀, 귀하가 기록 열람을 승인한 인물, 해당 기록과 관련하여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교직원, 자녀가 지정한 고등교육 기관 및 연방, 주, 지방 교육 기관 직원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기록 공개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했거나 법원 명령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기록이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밖의 모든 경우 접근이 거부됩니다. LEA 는 교육구 직원 및 학부모 이와 인물에 의한 기록 접근에 대해 일시, 이름 및 목적을 기록한 명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장애인 교육법 (IDEA)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참여 기관 사무관에게 개인 신상 정보 공개는 다음의 상황을 제외하고 사전에 학부모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1) 과도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 기관 요원에게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 및 (2) 학부모가 자녀를 거주지 교육구와 동일한 지역이 아닌 사립학교에 등교시키거나 등교시킬 예정인 경우, 사립학교가 위치한 교육구 직원과 거주지 교육구 직원들 사이에

아동의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교육 기록 검토 및/또는 사본은 요청 후 근무일 기준 5 일 이내에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기록을 찾고 꺼내는 비용이 아닌 사본에 대한 비용은 LEA 방침에 따라 부과되며 교육 기록 접근을 실제로 막지 않는 한 비용이 부과됩니다. 일단 완전한 기록 사본이 제공되면 동일한 기록에 대한 추가적인 사본 요청에 대해선 비용이 부과됩니다.

LEA가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한 교육 기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 소지나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귀하는 서면으로 그 정보를 정정하도록 LE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LEA가 귀하의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기록은 수정될 것이며 귀하의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안에 귀하에게 통보될 것입니다.

LEA가 정정 요구를 30 일 이내에 거부하는 경우, LEA는 문제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 또는 아동의 사생활이나 기타 권리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청문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통지할 것입니다. 귀하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LEA는 합리적인 시간 안에 청문회를 제공할 것이며, 해당 청문회는 FERPA 아래 청문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문회가 있는 후, 주무 위원회가 기록 수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귀하는 올바른 기록이라고 믿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이의제기 기록으로 영구히 첨부됩니다. 어느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이 진술서도 첨부됩니다.

IEP 모임을 오디오 녹음해도 되는가?

학부모, 후견인 또는 LEA는 IEP 팀 모임 진행 과정에 대해 오디오 녹음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IEP 팀은 모임 시작 최소 24 시간 전까지 IEP를 녹음하려는 의도를 통보받아야만 합니다. LEA가 모임을 오디오 녹음하고자 했으나 학부모가 이에 반대하거나 오디오 녹음 때문에 IEP 모임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모임은 녹음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부모는 오디오 녹음 내용을 확인 및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내용을 수정할 권리도 갖습니다.

독자적 교육 평가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독자적 교육 평가 (“IEE”)란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 교육기관 (LEA)에 의해 고용되지 않았으며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 및 LEA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자격 평가인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귀하가 LEA에서 실시한 최근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이러한 불만족을 LEA에 통보했다면 귀하는 공공 비용으로 유자격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IEE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가 공공 비용으로 IEE를 요청하는 경우, LEA는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1) 그들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귀하에게 반대되는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2) 귀하가 확보한 IEE가 LEA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LEA가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 비용으로 IEE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LEA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IEE를 받을

권리를 갖지만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공 비용이란 전체 평가 비용을 공공 기관에서 지불하거나 귀하가 비용을 낼 필요없이 다른 평가 제공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LEA는 IEE를 받을 수 있는 곳과 IEE에 대한 LEA 기준 정보가 있으며, 귀하가 IEE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LEA가 실시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공공 비용으로 각각의 LEA 평가에 한 번의 I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 비용으로 IEE를 실시하는 경우, IEE 평가 장소 및 평가인 자격을 포함하여 평가 수행 기준은 학부모의 IEE 권리와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평가를 시작할 때 LEA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해야만 합니다. LEA가 평가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제외하고, LEA는 공공 비용으로 IEE 실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기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청문관이 적법절차 불만 제기에 따른 청문의 일환으로 IEE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평가 비용은 공공 비용으로 부담해야만 합니다.

귀하가 개인 비용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그 사본을 LEA에 제공한 경우,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FAPE) 규정에 따라 IEP 팀은 평가 결과를 신중히 고려할 것입니다. 개인 비용으로 실시된 평가는 자녀의 적법절차 청문회에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동안 교육구가 자녀를 자신의 학급에서 관찰하거나 교육구 절차상 학급 관찰이 제공되는 경우, 현재의 교육 배치 및 제안된 교육 배치에서의 독자적 교육 평가에 대해서도 동등한 관찰 기회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본인 아이의 사립학교 배치에 대해 LEA에 자금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귀하가 자녀를 공공 비용으로 사립학교 배치를 제안하는 경우, LEA는 제안된 배치에 대해 관찰할 기회를 가질 것이며 학부모나 후견인이 일방적으로 사립학교에 이미 배치시켰다면 배치된 사립학교에서 학생을 관찰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관찰은 귀 자녀만 관찰할 것이며 제안된 배치에 있는 다른 학생에 대한 관찰이나 평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에 대한 LEA 관찰은 그 학생의 학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가 있을 때에만 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56329(d)를 위반하여 실시된 다른 학생에 대한 관찰 또는 평가 결과는 그 학생의 FAPE와 관련된 적법절차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전 서면 통지란 무엇이며 본인은 이것은 언제 받는가?

귀 자녀의 신분, 평가 또는 교육 배치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무료 공립교육 제공과 관련된 변경이 제안되거나 거부되는 어느 경우라도 LEA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LEA는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이러한 제안 또는 거부에 대해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이러한 통지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통지는 학부모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을 LEA가 받았을 때에도 제공됩니다. 이 통지서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히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의 모국어 또는 다른 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모국어 또는

소통 방식이 문어(written language)가 아닌 경우, LEA는 해당 통지문을 구두 또는 기타 방식으로 번역하여 귀하가 이 통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록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귀하의 LEA가 해당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이 통지를 전자우편 방식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LEA가 제안하였거나 거부한 조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관이 해당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이유.
- LEA의 제안 또는 거부의 근거로 사용한 각 평가의 절차, 테스트, 기록 또는 보고에 대한 설명.
- IEP 팀이 고려하고 있는 다른 옵션에 대한 설명 및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 LEA의 제안이나 거부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에 대한 설명.
- 학부모는 자녀 거주지 교육구의 특수교육 디렉터, 셀과 디렉터 또는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로부터 자신의 권리 및 절차적 안전장치 사본을 받거나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

학부모 동의란 무엇이며 그것은 언제 요구되는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EA는 자녀에 대한 평가 및/또는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지에 입각한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LEA는 아동에 대한 최초 평가나 재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고지에 입각한 학부모 동의를 받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가 최초 평가나 재평가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LEA는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에 앞서 학부모 동의를 얻기 위해 적법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최초** IEP 배치 및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는 경우, LEA는 귀하의 동의 거부를 반복하기 위해 아래에 기술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배치 및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LEA가 요청하였고 귀하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자녀에 대한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제공 요건을 LEA가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LEA의 요청이 있는 후 이같은 동의가 없었다면, LEA는 IEP 팀 모임을 소집하거나 목표를 수립할 것도 역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평가의 일환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검토하거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 또는 기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테스트나 평가 실시 이전에 모든 아동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 귀하의 자녀가 홈스쿨링을 하거나 자비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경우, 귀하가 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LEA는 귀하의 동의 없이 진행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LEA는 이 아동을 서비스에 자격이 있는 아동으로 간주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서면으로 자녀 IEP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수용할 수 있으며 이 항목들은 LEA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IEP에서 동의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들이 FAPE 제공으로 필요한 것으로 LEA가 판단하는 경우, LEA는 적법절차 청문회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재평가의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기 위해 LEA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귀하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밝힐 수 있다면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나중에 바꾸고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최초로 제공된 뒤에 아동의 부모는 언제라도 서면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교육구나 차터 스쿨은:

- 아동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이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의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 절차 또는 적법 절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아동에게 추가적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FAPE)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추가적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을 위한 IEP 모임을 소집하거나 IEP 를 수립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받은 후, 학부모가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하는 경우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동의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아동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다는 기록을 아동의 교육 기록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학부모가 모든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학부모가 모든 서비스가 아닌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귀하는 자녀가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 대해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평가 및 배치에 사용되는 자료와 절차는 인종, 문화 또는 성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자료는 제공되어야 하며 테스트는 자녀의 모국어 또는 소통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업, 발달, 기능적 측면에서 아동이 알고 있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 이것의 제공이나 실시가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자녀의 자격 결정과 FAPE 수립에서 하나의 절차가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 평가가 완료되면,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56026 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귀 자녀가 특별한 필요가 요구되는 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 교육적 권고 및 그 근거를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 또는 후견인 및 대리인이 포함된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 모임이 소집될 것입니다. 평가 보고서 사본과 자격 결정 서류를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제공해야만 됩니다.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 여부 결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자격 결정 요인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특별한 필요가 요구되는 아동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1. 미국 연방법 타이틀 20 섹션 6368(3)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읽기 교육에서 필수 요소를 포함하여 적절한 읽기 교육이 결핍되었다

2. 수학에서 적절한 교육이 결핍되었다
3. 영어 미숙
4. 학생은 연방 규정법 타이틀 34 섹션 300.8(a)에 따른 자격 요건을 달리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본인은 이것을 어떻게 제기하는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사, 학교 또는 교육구 행정관에게 연락하여 자녀와 귀하가 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구 또는 SELPA 직원은 자녀의 교육, 학부모 권리 및 절차상 안전장치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려점이 있는 경우, 이러한 비공식 대화는 종종 문제 해결과 원활한 소통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 교육구 또는 SELPA가 귀하의 우려 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경우, 다른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하여 특수 교육 관련 분쟁을 해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규정 비준수에 대한 불만 제기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권리는 무엇인가?

장애인 교육법 (IDEA) 또는 캘리포니아 특수교육법 하에 법 위반을 주장하는 규정 비준수 불만 제기가 있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서면으로 작성될 것; (2) LEA가 장애인 교육법 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아래의 법률이나 규정 위반에 대한 진술이 포함될 것; (3)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포함될 것; (4) 불만제기인의 서명 및 연락처; 그리고 (5) 특정 아동에 반한 위반이라는 주장인 경우: (a) 아동의 이름과 주소 (무주택 아동인 경우, 가능한 연락인 정보); (b) 아동의 등교 학교명; (c) 문제의 본질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설명; 및 (d) 아는 한도 내에서 제안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교육구/LEA 차원에서의 불만 제기: 미드-시티즈 SELPA는 특수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민원을 해당 지역 교육청(LEA)에 직접 제기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교육청이 비공식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귀하의 우려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이러한 민원 제기를 위한 기밀 유지 절차를 마련해 두었으며, 귀하와 면담을 통해 민원을 적시에 조사하고 모든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준법 담당관은 학군, 그 직원이나 계약업체, 학생을 상대로 한 차별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준법 담당관은 서면 민원서를 작성하는 데 드리고,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법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민원의 조사 및 해결을 담당하는 다른 기관으로 귀하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주정부 차원에서의 비준수 불만 제기: 개인 또는 단체도 LEA가 주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규정 비준수 불만을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CDE")에 또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비준수 불만을 접수하려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Special Education Division
Procedural Safeguards Referral Service
1430 N Street, Suite 2401
Sacramento, CA 95814
www.cde.ca.gov
Phone (800) 926-0648
FAX (916) 327-3704
CDE Constituent Support Phone: 800-926-0648
CDE Constituent Support Email: SEDCO@cde.ca.gov**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에서 이 부서는 서면 불만제기서 작성을 돕고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귀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CDE에 접수되는 비준수 불만제기서는 불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하는 이유가 되는 날로부터 일 (1) 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CDE에 불만제기서를 접수할 때 불만제기서 사본을 LEA에도 동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CDE는: (1) 필요시, 독자적인 현장 조사 실시; (2)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귀하에게 불만제기서에서의 주장을 보강할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 제공; (3) 불만 해결 제안을 포함하여 불만 제기에 대한 응답 기회를 LEA에 제공; (4) 귀하와 LEA가 자발적으로 중재에 참여하기로 합의할 기회 제공; (5) 모든 관련 정보들을 검토하며 LEA가 장애인 교육법 (IDEA) 및/또는 관련된 주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 (6) 제소장의 각 주장을 다루고 이에 대한 발견점과 결론 그리고 최종 결정 사유가 포함된 서면 결정문을 귀하와 LEA에 발송합니다.

OAH에 제출하는 “중재 전용 (mediation-only)” 요청이란 무엇인가?

캘리포니아에서 중재는 자발적 절차입니다. 귀하는 행정 청문국(“OAH”)에 “중재 전용” 모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전용”이란 적법절차 청문을 요청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재는 비적대적인 방식으로 실시되는 비공식 절차입니다. 중재 전용 모임을 요청하면 귀하와 LEA는 중재 일정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통지서에는 중재 일사 및 장소와 더불어 이 사건을 담당할 전문 지식을 갖춘 중립적인 중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됩니다.

중재는 OAH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일정을 정해야만 됩니다. 중재 전용 절차에는 변호사가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나 교육구는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을 동반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 동안 귀하와 LEA가 한 발언은 기밀로 유지되며, 적법 절차 청문회나 법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합의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만 합니다.

“중재 전용 (Mediation Only)” 요청은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OAH")
Attn: Special Education Divis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Phone (916) 263-0880
FAX (916) 263-0890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이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본인의 권리는 무엇인가?

적법절차 청문회란 행정법 판사가 주재하는 공식 절차로 법정 소송과 유사한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 평가 또는 교육 배치 시작이나 변경에 대한 제안 또는 거부 그리고 자녀에 대한 FAPE 제공 또는 자녀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가용성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귀하 또는 LEA에 의해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은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OAH")
Attn: Special Education Divis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Phone (916) 263-0880
FAX (916) 263-0890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서는 청문회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들을 귀하가 인지하거나 인지한 사유를 갖게 된 날짜로부터 이 (2) 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전에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시간 제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EA 가

- (1) 귀하 요청의 근거가 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잘못 전달하였다; 또는
- (2) 귀하에게 이 통지서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귀하가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거나 귀하 또는 LEA 가 적법절차에 따른 불만제기를 한 경우, LEA 는 그 지역에서 가용한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서비스나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알려야만 한다.

귀하의 적법절차 청문 불만제기서에는 다음의 정보들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1) 자녀의 이름; (2) 자녀의 주소 (또는 무주택 아동인 경우, 가용한 연락인 정보); (3) 자녀의 등교 학교명; (4)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포함하여 제안된 서비스 시작 또는 변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 (5) 귀하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해결책. 귀하는 적법절차 요청서 사본을 LEA에 제공해야만 합니다. 귀하 (또는 LEA)는 위에 기술된 정보 모두가 포함된 적법절차 청문 불만제기서가 제출될 때까지 적법절차 청문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만제기서를 받은 당사자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해당 불만제기서는 상기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는 사실을 청문 담당관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해당 불만제기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불만제기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통지를 불만제기서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OAH는 해당 적법절차 불만제기서가 상기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와 LEA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할 것입니다. OAH가 적법절차 불만 제기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앞서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불만제기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LEA는 귀하의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만제기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답변을 귀하에게 발송해야만 합니다. 귀하의 적법절차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LEA는 귀하, 적법절차 청문회 요청에서 판단된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있는 자녀의 IEP와 관련된 멤버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LEA 대표자와 함께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소집해야만 합니다. 귀하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는 한, LEA 변호사도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와 LEA 모두가 서면으로 문제 해결 절차 또는 중재 절차 사용 포기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문제 해결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귀하가 모임 참석에 동의할 때까지 해결 절차 및 적법절차 청문회 일정이 지연될 것입니다. 귀하의 불만제기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LEA가 해결 모임을 개최하지 않거나 해당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아래 설명된 적법절차 청문 절차 개시를 위해 청문관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모임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그 합의안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귀하와 LEA 대표 모두 서명해야만 됩니다. 서명 후, 귀하와 LEA 모두는 합의를 무효화시킬 3 업무일의 시간을 갖습니다. LEA가 적법절차 불만제기서를 받고 30일 안에(문제 해결 기간 동안) 귀하의 적법절차 불만제기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절차 청문회를 가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을 위한 일정이 적절히 계획될 것입니다. LEA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문서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모임에 귀하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LEA는 30일이 지나면 청문관에게 귀하의 불만제기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LEA는 적법절차 청문회 전 또는 진행 중 언제라도 분쟁 중재 참여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중재인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 없이 행정청문국(OAH)에 의해 선임됩니다. 중재 절차는 OAH가 결정을 내리는 기한을 연장합니다; 그럼에도 중재는 귀하의 청문 권리 또는 기타 권리를 부정하거나 지연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적법절차 요청의 사유가 된 문제들이 해결 모임 또는 중재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경우, OAH는 30일의 해결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케이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들에게 결정 사본을 우송해야만 합니다. 결정을 위한 45일의 기한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해결 모임을 갖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2) 중재 또는 해결 모임이 시작된 후 30일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3) 30일의 해결 기간 종료시 양 당사자가 중재를 계속하기로 서면 합의했으나, 이후 학부모 또는 LEA가 중재 절차에서 철수하는 경우.

청문회는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를 요청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절차 불만제기서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청문회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어느 당사자도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특수교육과 행정 청문회를 관장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서 공정하고 편견 없는 청문회를 가질 권리; (2) 변호사 또는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 대변될 권리; (3) 증거, 서면 및 구두 논거를 제출할 권리; (4) 대질, 반대 심문 및 증인 출석을 요청할 권리; (5) 청문회에 대한 서면 기록 또는 귀하의 선택에 따라 전자 녹취록을 받을 권리; (6) 문제 해결 세션 종료 후 45일 이내에 판정 및 결정을 서면이나 귀하 선택에 따라 전자 녹취록을 받을 권리; (7) 최소 청문회 10일 전에 상대방이 변호인에 의해 대변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권리; (8) 최소 청문회 10일 전에 상대방의 주장 및 제시된 해결안을 통보받을 권리; (9) 최소 청문회 5일 전에 당시까지 완료된 평가 및 권고안, 증인 명단 및 증언의 일반적 부분이 포함되는 모든 서류 사본을 받을 권리; (10) 최소 청문회 5일 전까지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평가 및 평가에 근거한 권고 사항이 포함된 증거를 청문회 제출을 금지할 것; (11)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및 (1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회 일정 연장을 요청할 권리.

청문회에 참여하는 부모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 청문회에 자녀를 동석시킬 권리; (2) 청문회를 공개로 진행할 권리; (3) 청문회 기록, 사실에 대한 판정 및 결정문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권리.

적법절차 불만제기가 IDEA 에 대한 절차적 위반을 제기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귀하의 자녀가 적절한 무료 공립교육(FAPE)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청문관의 결정은 실질적인 근거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절차적 위반(예: “불완전한 IEP 팀”)을 주장하는 문제에서, 청문관은 다음의 절차적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자녀가 FAPE 을 받지 못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적절한 무료 공립교육(FAPE)을 받을 귀 자녀의 권리가 방해받았다;
2. 귀 자녀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귀하의 기회를 상당히 방해받았다; 또는
3. 귀 자녀가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상기에 기술된 규정들은 청문관이 교육구에 IDEA 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또는 귀하가 이미 제기한 적법절차 불만 제기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에 대해 또 다른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적법절차 청문회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청문회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양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결정에 대해 적절한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행정 절차 기록 및 녹취를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정은 어느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증거를 심리할 수 있으며 결정은 증거의 우세를 근거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항소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이 있는 날짜로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적법절차 청문회 서류 동안 본인의 아이는 어디에 배치되는가?

적법절차 요청이 일단 LEA에 접수되면, 문제 해결 기간 및 공정한 적법절차 청문회 또는 법원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동은 학부모와 LEA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교육 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귀하의 적법절차 요청이 최초의 공립학교 입학 신청이 포함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귀하의 동의와 함께 공립학교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적법절차 요청이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 (“IFSP”)에 의거해 서비스를 받았던 아동을 위한 최초의 신청이고 아동이 3세가 되었다면, LEA는 아동이 받았던 IFS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LEA로부터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해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귀하가 최초 특수교육 서비스에 동의하였으며 적법절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LEA는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귀하와 LEA가 동의하는 분야)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대체적 임시 교육환경 (“IAES”)에 배치되었다면, 자녀는 적법절차 청문회 서류 동안 최대 45일 동안 또는 IAES 기간 종료 날짜 중 먼저 발생하는 날까지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어느 경우 상환되는가?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학부모가 이기는 경우, 법정은 재량으로 장애아 부모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LEA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찮고 부당하거나 근거없는 소인으로 소장을 제출한 학부모나 변호사 또는 소송이 명백히 하찮고 부당하거나 근거 없음이 밝혀진 이후에도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학부모나 변호사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LEA에게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소장 또는 후속 소인이 괴롭힘을 위해, 불필요한 지연을 위해, 또는 쓸데없이 소송 비용을 늘이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출된 경우, LEA는 학부모 또는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 비용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1) 학부모 또는 학부모 변호인이 사건의 최종 해결안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우; (2) 비용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시간당 비용을 초과한 경우; (3) 소요 시간 및 법적 서비스가 과도한 경우; (4) 또는 학부모 변호사가 적법절차 불만제기서에서 적절한 정보를 LEA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LEA가 소송이나 절차에서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켰거나 IDEA의 절차적 안전장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비용을 삭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LEA가 제안한 합의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거절 또는 응답하지 않는 경우, 청문관 또는 법정이 학부모가 받을 최종 보상금이 합의서에서 LEA가 제시한 금액보다

적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도 청문회나 법정 공방이 있는 후 10일이 지난 어느 시기에 발생한 추가적인 변호사 수임료나 비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승소하고 법정이 귀하의 합의안 거절이 상당히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 및 관련된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나 사법적 소송의 결과로 소집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가 IEP 팀 모임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변호사 수임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모임은 행정 청문회 또는 법정 행위의 결과로 소집된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변호사 수임 규정 목적에서 행정 청문회나 법정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LEA가 본인 아이에게 훈육조치를 취하려 할 때 본인의 권리는 무엇인가?

교직원은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한 장애 아동에 대한 배치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사안별로 독특한 상황들을 고려합니다. 교직원은 학생 행동 규정을 위반한 장애 아동을 현재의 배치에서 적절한 임시 대체 교육 환경(IAES)이나 다른 배치로 이동하거나 최대 10 연속 수업일의 정학을 내릴 수 있으며 (대체 환경은 비장애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별개의 다른 비행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격리가 배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한 학사년도 내에서 10 연속 수업일 이하의 추가적인 배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치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합니다: 배제가 10 연속 수업일 이상인 경우, 또는 아동의 일련의 배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의 패턴을 구성합니다: (1) 일련의 배제 기간이 한 학사년도에 총 10일 이상인 경우; (2) 아동의 행동이 이전에 일련의 배제를 초래한 사건들에서 아동의 행동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그리고 (3) 각 배제 조치 시간, 아동의 총 배제 시간, 그리고 배제 조치 간의 시간적 근접성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들. LEA는 배제 패턴이 배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장애 아동이 학생 행동 규정 위반으로 인해 학교 수업일 기준으로 10 일 연속 또는 누적 10 일 이상 현재의 배치에서 배제된 경우, 그같은 배제가 배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LEA는 징계 대상이 된 행동이 자녀의 장애로 나타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IEP 팀 모임을 소집해야 합니다. 이 모임은 아동의 배치 변경을 결정한 날로부터 10 수업일 안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IEP 팀은 문제의 행동이: (1)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장애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또는 (2) LEA가 아동의 IEP를 이행하지 못한 것의 직접적인 결과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LEA, 학부모 및 IEP 팀 관련 멤버들이 해당 행동은 아동의 장애 발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IEP 팀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1) 배치 변경을 초래한 아동의 행동 이전에 이미 실시된 적이 없는 한, 기능적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행동 중재 계획안 실행; 또는 (2) 기존의 행동 중재 계획안을 검토하고 행동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상기의 옵션들 중 하나에 추가하여, IEP 팀은 학부모와 LEA가 행동 중재 계획 수정의 일환으로 배치 변경에 합의하지 않는 한, 아동이 배제되었던 배치로 복귀시켜야만 합니다.

팀이 그 행동은 아동의 장애가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학교 관계자는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기간으로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비록 다른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가 일반 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IEP 목표 달성을 향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아동의 IEP 팀은 적절한 서비스들과 이 서비스들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아동은 기능적 행동 평가를 받아야만 하며 위반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안된 행동 중재 서비스와 조정을 제공받아야만 합니다.

학부모는 적법절차 불만제기를 제출함으로써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정학 또는 퇴학 결정에 대해 또는 아동의 행동은 그의 장애가 발현(manifestation, 發現)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그 아동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EA는 적법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징계성 배치 또는 발현 결정 모임 결과와 관련하여 학부모나 LEA 중 어느 누구든 이의를 제기하여 항의가 요청되는 경우, OAH는 신속한 청문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청문회를 요청한 날로부터 20 학사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청문회 후 10 학사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학부모와 LEA가 서면으로 해결 모임 면제를 합의하지 않는 한, 해결 모임은 LEA가 적법절차 불만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결 모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LEA가 적법절차 불만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부모와 LEA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적법절차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교육 환경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45 수업일 동안 임시 대체 교육 환경(IAES)에 배치된 경우, 청문관의 결정이 내려지거나 정학 기간 만료 중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할 때까지 배치는 유지됩니다.

이전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은 아동이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동 발생 이전에 해당 아동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LEA가 알았다면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장애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학부모가 교육구 감독관이나 행정 직원 또는 아동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아동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표현한 경우; (2) 학부모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경우; 또는 (3) 교직원이 LEA의 특수교육 디렉터 또는 기타 감독 직원에게 아동이 보이는 행동 패턴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경우입니다. 학부모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또는 아동을 평가하였으나 아동은 서비스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LEA는 아동의 장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LEA가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 아동은 IDEA에 따른 적법절차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징계 조치 서류 중 아동에 대한 평가가 요청되는 경우, 평가는 신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동은 학교 당국이 결정한 교육 환경에 머물러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정학이나 퇴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법은 학교 관계자가 귀 자녀가 저지른 범죄를 적절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장애 아동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는 LEA는 관련 당국의 검토를 위해 아동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을 전달해야 하지만 이는 오직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인의 아이가 임시 대체 교육환경(IAES)에 배치되는 경우, 그 절차는 무엇인가?

특별한 정황 하에서, 아동의 행동이 그의 장애 발현(manifestation, 發現)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학교, 학교 부지 또는 주나 LEA 관할하에 있는 학교 행사에서 다음 중 어느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학교 관계자는 학생을 45 수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 대체 교육환경(IAES)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1) 무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한 경우; (2) 불법적인 마약류임을 알면서 소지, 사용하였거나 통제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요구한 경우; (3)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힌 경우. 아동을 45 수업일 동안 IAES 배치를 결정한 후 LEA가 아직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LEA는 기능 행동 평가를 실시하고 행동중재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경우). 이같은 중재안이 이미 실시중인 경우, IEP 팀은 이 조정을 숙고하여야 합니다. IEP 팀은 아동이 IAES로서 일반 교과 과정에 참여하며, IEP에서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고, 위법 행동을 다룰 수 있는 조정을 제공하며, IEP에 기술된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 및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방법 하에서, 청문관은 장애 아동을 배제되었던 배치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문관은 이같은 아동의 현 배치 유지가 아동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최대 45 수업일 안에서 적절한 IAES 배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립 특수학교란 무엇인가?

주립 특수학교는 농아, 청력 어려움, 맹아, 시각 장애 또는 농-맹아 학생들에게 다음의 3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remont 및 Riverside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농아학교 그리고 Fremont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맹아학교. 주립 농아학교는 유아로부터 21세까지의 학생들에게 거주 및 주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맹아학교에서는 5세부터 21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주립 특수학교는 평가 서비스와 테크닉 지원도 제공합니다. 주립 특수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주 교육부 웹사이트 <http://www.cde.gov/sp/ss/>를 방문하거나 자녀의 IEP 팀이나 셀과 디렉터에게 연락하십시오.

본인의 아이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본인의 결정과 관련된 규정은 무엇인가?

LEA 가 귀하의 장애 자녀에게 적절한 무료 공립교육(FAPE)을 제공했음에도 귀하가 자녀를 사립학교나 시설에 보내기로 선택한 경우, IDEA 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사립학교나 시설에서의 교육 비용을 LEA 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립학교가 위치한 교육구는 34 CFR §§300.131~300.144 에 따라 학부모가 사립학교에 배치한 아동을 IDEA 규정 아래 도움이 필요한 아동으로 귀하의 자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나 기관에 배치한 데 따른 비용 상환은 LEA 가 자녀를 사립 기관에 등록시키기 전에 FAPE 을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학교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문관 또는 법원에 의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공립학교로부터 나가기 전에 열린 가장 최근의 IEP 팀 모임에서, 학부모가 제안된 배치안을 거부하였고 공적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LEA 에 알리지 않았거나 공립학교에서 자녀가 나가기 최소 10 수업일 전에 LEA 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비용 상환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립학교를 떠나가기 전에 LEA 가 아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학부모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평가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거나 자녀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비용 상환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행동이 불합리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상환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환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LEA 가 학부모에게 통지서 제공을 막은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EA 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학부모가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통지 요건을 준수할 경우 아동에게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부모가 글을 모르거나 영어를 쓸 수 없거나 또는 통지 요건을 준수하면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위해가 초래될 것 같은 경우, 법원 또는 청문관 재량으로 상환 비용을 감액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정황 속에서 대리 부모가 아동을 위해 지명되는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은 대리 부모가 필요하다고 LEA가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다음과 같은 경우 LEA는 아동을 위한 대리 부모를 지명합니다:

1. 아동은 법원의 피부양인 또는 피후견인이며, 법정은 아동을 위한 교육 결정에서 부모나 후견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아동은 그를 대변할 책임있는 부모나 후견인을 갖고 있지 않다; 또는
2. 아동은 법원의 피후견인 또는 피부양인이 아니며 **그리고** 학부모나 후견인이 행방불명 상태이고
또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없거나 **또는** 동반자가 없는 무주택 청소년이다.

아동을 위한 대리 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 LEA 는 친척으로서 돌보는 사람, 위탁 부모, 또는 법원이 지정한 특별 후원인이 존재한다면 이들을 고려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정할 것입니다.

대리 부모는 아동을 적절히 대변할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리 부모는 아동을 최소 1 회 만나야 하며, 이같은 사람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문화적으로 아동을 배려해야 합니다. 대리 부모는 장애 판정, 평가, 교육 계획 및 목표 수립, 교육 배치, IEP 검토 및 수정 그리고 비응급 의료 서비스, 정신건강 치료, 작업 및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IEP 동의서 제공을 포함하여 아동의 FAPE 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서 아동을 대변해야 합니다.

아동을 대변하는 데 있어 이해상충이 있는 사람은 대리 부모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대리 부모가 아동의 교육이나 돌보는 것과 관련된 LEA 직원이거나, 대리 부모의 주 수입원이 이 아동이나 다른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위탁 양육인인 경우, 이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양 양육인, 은퇴 교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보호 관찰관 등은 모두 대리 부모로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는 무주택 청년인 경우, 비상 및 임시 대피소,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가두 선도 프로그램 요원들은 상기에 기술된 이해상충과 상관없이 위에서 기술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대리 부모를 찾을 때까지 임시로 대리 부모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안적으로, 대리 부모가 위에서 기술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 보호를 감독하는 판사 (LEA 가 아닌)에 의해 대리 부모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왜 건강과 관련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캘리포니아 메디칼에 청구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또는 교환에 대해 동의를 요구받는가?

지역 교육기관 (LEA) 메디칼 비용 청구 옵션을 통해,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메디칼 수급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본 LEA 는 캘리포니아 메디칼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LEA 프로그램은 교육구 및/또는 카운티 교육청(COEs)이 건강과 관련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비용 지불을 돕기 위해 연방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는 귀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정보는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귀하에게 가능한 권리와 보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LEA 가 귀 자녀의 메디칼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동의를 처음으로 요청하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귀하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

- 귀하는 IEP 에서 메디칼 동의 섹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자녀와 가족 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 귀하의 권리는 연방 규정집(CFR) 타이틀 34 300.154 조; 1974 년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미국 법전 타이틀 20 섹션 1232(g); 및 연방 규정집 타이틀 34 섹션 99 에 따라 보장됩니다.
- 이 동의는 귀하가 일 년이 되기 이전에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1 년간 유효하며, 매년 IEP 모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의는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 이 취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동의 이후부터 취소를 한 시점 사이에 발생한 비용 청구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동의에는 개인 식별 정보(예: 자녀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기록 또는 정보), 정보 공개 목적(예: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 그리고 귀하의 LEA 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관(예: 메디칼)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귀하의 동의에는 자녀의 LEA 가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귀하 또는 자녀의 공공 복지 혜택이나 보험(예: 메디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귀하가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LEA 는 IEP 의 메디칼 청구 언급 섹션에 귀하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이 동의를 확보할 것입니다.

귀하의 동의는 학교 외부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제한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특수교육 및/또는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LEA 가 캘리포니아 메디칼을 이용하는 것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LEA 는 귀하에게 비용 부담 없이 요구되는 모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인 LEA 는 FAPE 을 위해 IDEA 파트 B 에 따라 요구되는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학부모의 공공 배네티트나 보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FAPE 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LEA 는:

- IDEA 파트 B 에 따라 아동이 FAPE 을 제공받기 위해 공공 배네티트나 보험 프로그램(메디칼)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도록 학부모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34 CFR 300.154 [d][2][i]).
- 메디칼을 통한 서비스 및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제액 (deductible)이나 본인 부담금(co-pay)과 같은 비용을 학부모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o-pay 와 같이 귀하에게 달리 지불하도록 요구되는 비용을 LEA 가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34 CFR 300.154[d][2][ii]).
- 학생의 메디칼 배네티트 사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배네티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 가능한 평생 보장 또는 기타 보험 배네티트가 축소되는 경우.
 - 아동이 학교에 있는 시간 이외에 아동에게 요구되고 공적 배네티트 또는 보험 프로그램(메디칼)을 통해 달리 충당될 수 있었던 서비스를 가족이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보험료 인상 또는 공공 배네티트 또는 보험(메디칼)이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
 - 건강과 관련된 총 지출에 근거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예외(waiver)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34 CFR 300.154[d][2][iii][A-D]).

대체 분쟁 해결

미드-시티즈 SELPA 는 가능한 한 모든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규정 준수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정식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대체 분쟁 해결(ADR)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경우, SELPA 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지정된 SELPA 직원이나 당사의 ADR 조정관 중 한 명과 면담하실 수 있습니다. SELPA 직원이나 당사가 계약한 ADR 조정관 중 한 명에게 지원을 요청하시려면 Mid-Cities SELPA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DR 중재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밀을 유지합니다. ADR 절차를 통해 귀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도움을 받기 위해 적절한 외부 기관으로 안내될 수도 있습니다.

미드시티즈 SELPA

16703 S. Clark Avenue, C 동

캘리포니아주 벨플라워, 90706

(562) 866-9011 내선 2050

SELPA 소장

다이애나 제페다-맥질(교육학 박사) 페이지

준법감시인

Alma Ulloa, Ed.D. 학생 지원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Phone (562) 866-9011 / Fax (562) 866-3287	벨플라워 통합 교육구 16703 S. Clark Avenue Bellflower, CA 90706
Héctor H. Márquez-Mesa, Ed.D. 특수교육 서비스 담당 이사 Phone (310) 886-1600 / Fax (310) 639-6096	린우드 통합 교육구 11321 Bullis Road Lynwood, CA 90262
Mayra J. Helguera, Ed.D. 특수교육 담당 이사 Phone (562) 602-6033 / Fax (562) 602-8113	파라마운트 통합 교육구 15110 California Avenue Paramount, CA 90723
Diana Zepeda-McZeal, Ed.D. SELPA 소장 Phone (562) 866-9011 / Fax (562) 461-2244	미드시티즈 SELPA 16703 S. Clark Avenue, Building C Bellflower, CA 90706

기록 관리자

Alma Ulloa, Ed.D. 학생 지원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Phone (562) 866-9011 / Fax (562) 866-3287	벨플라워 통합 교육구 16703 S. Clark Avenue Bellflower, CA 90706
Héctor H. Márquez-Mesa, Ed.D. 특수교육 서비스 담당 이사 Phone (310) 886-1600 / Fax (310) 639-6096	린우드 통합 교육구 11321 Bullis Road Lynwood, CA 90262
Lisa Kirk, J.D. 학생 지원 담당 이사 Phone (562) 602-6033 / Fax (562) 602-8113	파라마운트 통합 교육구 15110 California Avenue Paramount, CA 90723

특수교육

Matthew Adair 특수교육부장 Phone (562) 866-9011 / Fax (562) 866-3287	벨플라워 통합 교육구 16703 S. Clark Avenue Bellflower, CA 90706
Héctor H. Márquez-Mesa, Ed.D. 특수교육 서비스 담당 이사 Phone (310) 886-1600 / Fax (310) 639-6096	린우드 통합 교육구 11321 Bullis Road Lynwood, CA 90262
Mayra J. Helguera, Ed.D. 특수교육 담당 이사 Phone (562) 602-6033 / Fax (562) 602-8113	파라마운트 통합 교육구 15110 California Avenue Paramount, CA 90723
Diana Zepeda-McZeal, Ed.D. SELPA 소장 Phone (562) 866-9011 / Fax (562) 461-2244	미드시티즈 SELPA 16703 S. Clark Avenue, Building C Bellflower, CA 90706